

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발의일 : 2021. 7.

1. 제안이유

- 2021.05.18. 입법예고된 「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안에 “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에 관하여는 「주차장법」 제19조에 따라 해당 시·군의 조례로 정한다.”가 규정되어 있어 본 사항을 「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」 제40조제5항제1호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 부지 내 토지 등을 제공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공면적에 대한 임대료 산정비용 등에 비례하여 주차장 확보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. (안 제5조 제1호)
- 나. 제1호의 임대료 및 주차장 확보비용의 산정은 제4조의 토지가액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.(안 제5조 제2호)

3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(시행일 : 2021년 3월 23일)의 개정 목적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 등이 관리·운영하고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100분의 50 미만까지 확보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그 범위에서 완화하려는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